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발의)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 윤 기
(관악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지난 11년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는 부분은 청년의 참여권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인구 925만명 중 2·30대는 284만명으로 약 30.7%(‘19년 기준, KOSIS)이지만,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2·30대 비율은 약 5.5%에 불과(‘19년 기준)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주요한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인구 비중에 비해 청년들의 서울시정 참여에 대한 보장이 제한적이고 기회 제공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년들의 권리보장 및 지원 측면에서 미흡한 바,

- 이에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위원회 등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심의사항의 구체화 및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 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조례가 상위 법인 청년기본법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청년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친화위원회로 선정된 위원회에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고,

□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들의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 인재 추천을 위한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잘 반영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는 청년의 선택이 아닌 기성세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년의 사회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